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6호  
2021. 1. 25.(월)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입법예고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82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85호) ..... 8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

####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팟캐스트 방송제작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복합문화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복합문화센터 사무실 (전화: 042-608-6283, FAX: 042-608-3860, E-mail:

nisi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담당자 최정윤(전화: 042-608-62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팟캐스트(Pod cast)”란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방송시스템”이란 마을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장비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추진 기본방향
2.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견학, 매체 제작, 멘토링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미디어 제작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
5. 마을미디어 홍보사업
6. 팟캐스트 방송페이지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 활용)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는 운영단체가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참여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팟캐스트 방송제작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디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대덕구의 팟캐스트 방송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소식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팟캐스트 방송제작단(이하 “제작단”이라 한다) 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작단원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덕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직장인, 대덕구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회원으로써 미디어 제작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작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작단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마을미디어 활동가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

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부터 제14조까지).

바. 탄소인지예산제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사. 탄소인지예산제의 구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에너지과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과학과

(전화 : 042-608-4072, FAX : 042-608-3837, E-mail : hambakmiso@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과학과 담당자 김은예(전화 : 042-608-4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 및 탄소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 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  
서의 장
3. 대덕구의 탄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탄소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탄소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  
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에너지과학과 과학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구민 참여 및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

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성장추진계획)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지역실

정에 맞는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는 구민·학교·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